

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아량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33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월 24일

발 의 자 : 송아량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정진술, 이은주, 정진철, 송도호,
이승미, 오중석, 추승우, 김태호,
경만선, 우형찬 의원(10명)

1. 제안 이유

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택시업계 발전과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, 서울시의 감독 의무, 목적 외 사용 시 재정지원 환수조치 및 해당 사업의 재정지원 제외 등 제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 골자

가. 택시 재정지원금에 대한 재정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, 서울시 감독 의무, 목적 외 사용 시 재정지원 환수조치 및 해당 사업의 재정지원 제외 규정을 신설함(안 제10조의2)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

-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재정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) ①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해당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.

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,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〈신 설〉</p>	<p>제10조의2(재정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) ①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해당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.</p> <p>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,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